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1월 8일 10: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1. 8.(월)	담당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국세청 조사2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담당과장	황인목 과장(044-201-6920) 이선혜 과장(044-203-4930) 전상훈 과장(044-200-4551) 김승민 과장(044-204-3601) 한 민 과장(042-481-7810) 나영민 과장(02-3150-2037)	담 당 자	조순이 사무관(044-201-6929) 이라노 사무관(044-203-4934) 박진석 사무관(044-200-4554) 김형준 사무관(044-204-3622) 박시원 사무관(042-481-7851) 김태현 계 장(02-3150-2168)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 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 요소 수입업체(약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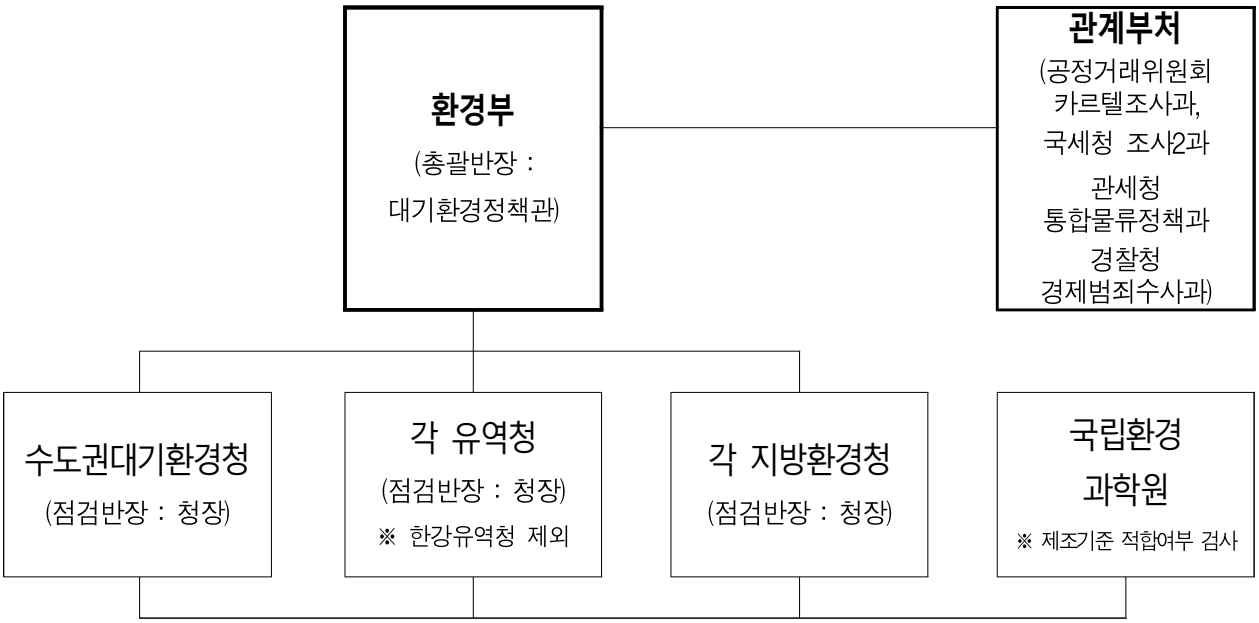
○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정부 합동단속반 체계도.
2. 점검 내용 및 조치 내용.
3.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조순이 사무관(☎ 044-201-6929), 산업통상자원부 이라노 사무관(☎ 044-203-4934),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사무관(☎ 044-204-4554), 국세청 김형준 사무관(☎044-204-3622), 관세청 박시원 사무관(☎ 042-481-7821), 경찰청 김태현 계장(☎ 02-3150-20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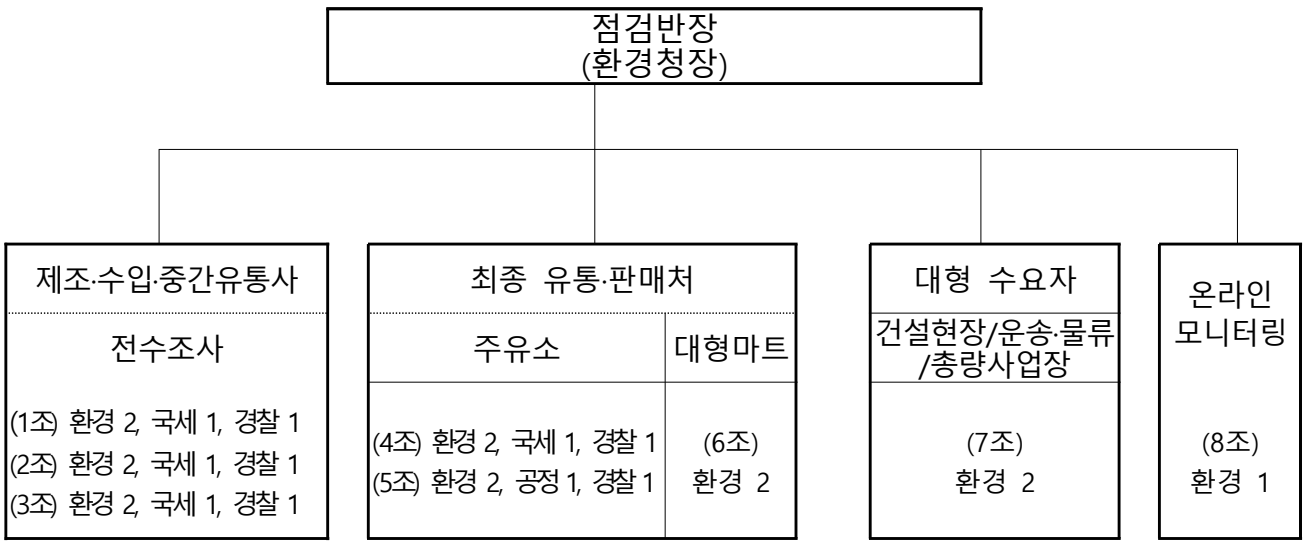
붙임 1 정부 합동단속반 체계도

□ 점검반 체계도 (차량용 요소수)



※ 점검반원 구성 : 환경청 + 공정위 + 국세청 + 경찰청(상황에 따라 변경)
※ 관세청은 수입 관련 자료 필요 시 및 보세구역 내 점검 필요 시 협조

□ 합동단속반 운영 현황(예)



붙임 2 점검 내용 및 조치 내용

근거법률 및 벌칙·과태료		조치 내용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매점매석 행위		
▪ (2020년 이전 영업자)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 (2020년 이후 영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 (2021년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고시 제5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 매점매석 행위 확인 시 → 고발조치
▪ (예외조항) 조사 시점에 소비자 반환 증가로 과다하게 보관, 보관(재고)량이 적어 판매이익보다 물류비용이 많아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시 제5조제2항)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 제16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 검사 거부 등 → 고발조치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법 제16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9조)	▪ 자료 제출거부 등 → 과태료부과
2. 대기환경보전법 :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및 검사		
▪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수입) ▪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 _ 74제2항 ▪ 촉매제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법 제74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89조)	▪ 검사 거부 등 → 고발조치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 (법 제7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 검사 거부 등 → 고발조치
▪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법 제74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1조)	▪ 제품 미표시 등 → 고발조치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법 제7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제3항)	▪ 사용자 발견 시 → 과태료부과

붙임 3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2021. 11.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붙임 4 **질의응답**

① 정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10.15)로 인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부족, 그에 따른 불법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음

○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음

② 이번 단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요수 수입업자, 요소수 제조·수입업자, 중간 유통사 및 판매사 등으로 연결되는 유통망을 파악, 시장교란행위를 일소하는 것임

○ 7개 권역에 점검·단속반 및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총 31개조 101명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행위들을 엄단할 것임

③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들은?

□ 단속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동행할 것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들은 고발 조치될 것임

○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고,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것임